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호[주식]

2. 변경시행일 : 2023년 03월 07일

3. 변경사유

- ① 모투자신탁의 투자자문계약 해지
- ②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
- ③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(15.49% → 16.02%)
- ④ 투자대상자산 추가(환매조건부매수)
- 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의무, 용어정리 등)
- ⑥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4. 변경사항

가. 집합투자규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17조 (투자대상자산 등)	집합투자업자는 __ 운용한다. 1. (생략) 2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3.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4. (생략) <신 설>	① 집합투자업자는 __ 운용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 2.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단기대출(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) 2.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

		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제18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___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(생략) 2.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___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집합투자업자는 ___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제17조제2항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___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그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19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	집합투자업자는 ___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___ 운용할 수 없다. 가. (생략) 나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)	집합투자업자는 ___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___ 운용할 수 없다.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환매조건부매수
제23조 (운용행위 감시의무 등)	① 내지 ③ (생략) ④ 신탁업자는 ___ 확인하여야 한다. 1. 내지 2. (생략) <신 설> 3. 내지 4. (생략) 5.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등 <신 설> ⑤ (생략)	①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신탁업자는 ___ 확인하여야 한다. 1. 내지 2. (현행과 같음) 3.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. 내지 5. (현행과 같음) 6.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⑤ (현행과 같음)
제30조 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___ 계산한다. ② 내지 ④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___ 계산한다. ② 내지 ④ (현행과 같음)
제32조 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작성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2. 내지 3.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작성하여야 한다. 1. 재무상태표 2. 내지 3. (현행과 같음)

	② 내지 ③ (생략)	②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
제39조 (보수)	① (생략) ② 투자신탁보수의 ___ 투자신탁보수를 매 일 대차대조표상 에 계상하고 ___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내지 3. (생략) ③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 ② 투자신탁보수의 ___ 투자신탁보수를 매 일 재무상태표상 에 계상하고 ___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내지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49조 (공시 및 보고 서 등)	① (생략) ② 집합투자업자는 ___ 공시(이하 "수시공 시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괄호 추가) 3. 내지 5. (생략) ③ 내지 ⑨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 ② 집합투자업자는 ___ 공시(이하 "수시공 시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 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 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 3. 내지 5. (현행과 같음) ③ 내지 ⑨ (현행과 같음)
부칙	<신 설>	이 신탁계약은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 한다.

나. 등록신청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추 가>	2023-03-07 · 모투자신탁의 투자자문계약 해 지 · 신탁계약 변경 - 투자대상자산 추가(환매조건부 매수) 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(신탁업자의 운용행 위 감시의무, 용어정리 등)
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	-	(업데이트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<추 가>	환매조건부매수 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)
	다만,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___ 모	다만,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___ 모

	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	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②부터 ④까지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	<추 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증권대여 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. 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· 증권차입 : 효율적 운용,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] 1. 자산운용의 기본방침	[투자자문업자] UBP 에셋 매니지먼트 아시아 리미티드(UBP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)	<삭 제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] 4. 투자대상국가의 현황	-	(업데이트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	투자자문 위험	<삭 제>
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<추 가>	증권대차 거래 위험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※ 실제 수익률 변동성(실제 연환 산 표준편차 : 최직근 결산일 기 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) : 15.49%	※ 실제 수익률 변동성(실제 연환 산 표준편차 : 최직근 결산일 기 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) : 16.02%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 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(업데이트)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(반기)	-	(업데이트)
	<기업공시서식 반영>	·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· 주식의 매매회전율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(업데이트)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-	(업데이트)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 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 (2) 의무 및 책임 (가) 의무	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<추 가>	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 한지의 여부 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 지의 여부 -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 항
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. 회사의 개요	KIS채권평가	KIS자산평가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	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 정 및 그 사유	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 정 및 그 사유(법 제 230 조에 따 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 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 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 한다)

끝.